

朝鮮後期 京江邊 營繕木材에 관한 研究

李權英

(동부산전문대학 조교수)

徐致祥

(동명정보대학교 부교수)

金純一

(부산대학교 교수)

1. 머리말

한국건축의 주류인 목조가구식 구조에서 목재는 건축물의 완성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였다. 따라서 양질의 목재를 확보하는 것은 건축의 성패를 좌우하는 절대관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대량, 고주, 추녀와 같은 대재는 공사의 여부를 좌우하는 요소였다.

목재는 용재로 쓸 수 있게 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탓에 지속적인 대량생산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운송과 저류상의 어려움으로 상품으로서 유통되기도 쉽지 않았다. 그런 만큼 건축용 목재의 원활한 조달은 국가적인 주요 관심사였으며, 이에 禁山을 지정하거나 松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궁궐이나 관아조영에 소요되는 재목을 확보하고자 하였다.¹⁾

이러한 官需木材는 일차적으로 산지외도로부터 연례의 常貢을 통하여 확보하였다. 즉 강원도나 충청·전라·황해도의 목재를 繕工監貢人이나 外都庫를 통한 貢納으로 조달하였다.²⁾ 그러나 대대적인 궁궐조영의 경우는 엄청난 물량

이 단기간에 소요되는 탓에 산지외도에 적정량을 卜定(지정)하는 別貢을 통하여 조달하였지만, 어쨌든 목재는 공납을 통하여 조달한 점에서는 다를 바 없었다.

그러나 조선후기로 오면서 사회·경제적 체제의 붕괴와 함께 목재의 공급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제한적이지만 영선목재와 柴木 등을 공급하는 상인들이 성장하고 있었다. 이들은 목물을 비축하여 관아와 민간에 공급함으로써 상당한 부를 축적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목재 저류지 주변에서 부재로 治鍊하는 專業工匠이나, 운반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렇게 목재가 상품으로서 유통될 수 있었던 것은 부재의 규격이나 단위척도의 일반화, 治鍊工役의 계량화가 가능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부재의 신속한 공급과 공기의 단축과 같은 건설공정의 합리화를 이끌어 냄으로써 건축생산력을 진작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경강, 즉 오늘의 용산, 마포, 뚝섬, 밤섬 일대는 조선시대 건축용 목재의 중간

1) 吳星, 『朝鮮後期商人研究』, --潮閣, 1997, 서울, pp. 91~108 참고

2) 앞의 책, pp. 60, 61 참고

공급처였던 점에서 건축생산상의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이곳은 선박건조나 각종 물자의 水運과 관련하여 일찍부터 상업이 발달하였다. 영선목재의 경우도 전국의 산지에서 벌목된 체목들이 수운으로 운송·저류되어 도성내로 공급되었다.³⁾ 이러한 목재 가운데는 체목 외에도 治鍊된 부재들도 있었으며, 궁궐과 관아의 조영에 소용되는 목재였던 만큼 이곳에 治木所를 두고서 목재를 看審하고 치련을 감독하며 운송을 감독할 관리가 파견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목재저류지 주위로 판아와 민간에 목재를 판매하는 상인들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들과 함께 체목을 중간부재로 치련하는 船匠이나 鉛匠, 목재를 운송하는 車軍·役夫들도 이를 통하여 관련 산업을 발전시켜 나갔다. 특히 조선후기로 오면서 관영공사에서도 종래의 外道貢納 만으로 부족한 경우는 민간 목재상들이 상당 물량을 공급하기도 하였다.

그런 점에서 각종 건축공사의 목재 공급처였던 경강 일대는 조선시대 건축생산의 기반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목재의 저류 뿐 아니라 치련부재의 유통과 판매, 운송과 같은 연관산업을 발전시켜 나갔다.

이후 경강변은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는 근대적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한국전통건축과 명운을 함께 했던 점에서 건축생산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본 논문은 조선후기 경강변의 목재저류와 치목공역을 통하여 공급되던 영선목재의 조달과정을 살펴 보고, 이와 함께 목재상의 활동 및 치련공역과 운송 등의 관련 산업활동의 추이를 파악함으로써 조선후기 건축생산활동의 좌표를 도출하고자 시도의 일환이다.

2. 경강의 木材水運

1-1. 경강 목재업의 발전

3) 係賴睦, 『朝鮮時代都市社會研究』, 一志社, 1982, 서울, p. 255 참고

경강은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서 대내적으로 국가재정의 보급로로, 대외적으로는 무역물자의 수송로였다. 각 도로부터 貢物의 원활한 수운과 저류는 신흥왕권의 기반을 다지는데 필수적인 일이었다. 그런 만큼 경강은 국가의 물자보급로로서 그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었다.

용산 등지는 이러한 수운의 대표적인 곳으로서 선박의 정박이 용이하고, 도성까지의 운반 거리도 짧거나와 구릉과 같은 장애물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상류로부터의 潛運은 용산 강안에 있는 軍資監의 江監과 豊儲倉의 江倉에, 그리고 하류로부터의 潛運은 西江沿岸에 있는 廣興倉 및 豊儲倉의 江倉에 저장되었으며, 자연히 물자의 매매와 운송업, 조선업이 일찍부터 발달하게 되었다.

한편 조선초기 서울의 상업구조는 市廳 상업이 중심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16세기경부터 증가한 私商人層은 자본축적을 통하여 市廳 상인과 대립하는 亂廳 세력으로 성장해 갔는데, 이들의 근거지가 된 곳이 바로 경강변이었다. 즉 용산, 서강, 마포, 밤섬, 노량, 동작, 서빙고, 한강진, 두모포, 뚝섬, 송파 등이 그곳으로, 강변에 帶狀으로 상공업 중심의 위성적 시가지를 이루었던 것이다. 특히 18세기말 정조년간 용산항과 마포항 일대를 합한 龍山坊의 인구는 지방도시인 개성·평양·상주·전주 다음 가는 규모였을 정도로 산업이 발전하였다.⁴⁾

이와 함께 外道로부터 운반된 목재가 집산·저류되는 곳도 경강이었다. 태조 3년 종묘의 수축을 위하여 工作局을 설치하면서, 소요목재를 살펴 보러 세자가 용산으로 행차했다⁵⁾는 기록에서 일찍부터 영선목재의 저류지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태조 6년 왕이 용산강에 나아가 선박관리와 造船을 담당하던 司水監에서 兵船新造를 둘러보았다거나⁶⁾, 세조년간에 조선건조를 위한 典艦司의 外司가 西江에 있다⁷⁾는 기록

4) 係賴睦, 앞의 책, pp. 246~250, 256 참고

5) 『太祖實錄』卷六 三年甲戌十一月 戊戌條, 同 己亥條, 同 丙午條

6) 『太祖實錄』 권12, 太祖 6년 8월 丁亥條

7) 민족문화추진회 편, 『신증동국여지승람1』, 제2권 경도

에서 船材도 취급되었으며, 동국여지승람의 내용과 같이 한성부의 이곳에만 뱃감나무를 판매하는 柴木廳도 있었다.⁸⁾ 즉 이 일대는 서울에서 소용되는 영선목재 뿐 아니라 船材나 뱃감나무에 이르기까지 모든 목물의 유력한 집산지이자 거래처였던 것이다.

특히 임란 이후 산림의 황폐화로 취해진 송산보호 조치의 강화로 목재의 조달은 경강 일대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서도 용산, 마포, 서강 일대는 평안, 황해, 삼남지방 등 원거리에서 운반되어 온 건축용 목재를 주로 취급하였던 데 반하여 두모포 등지는 비교적 근거리인 경기, 강원, 충청지방에서 오는 柴炭이 주였다.⁹⁾

당시 영선목재를 가장 많이 취급했던 곳으로 지칭되는 용산, 용산강 또는 용강만 하더라도 상당히 넓은 지역이다. 舊용산을 남북으로 흐르는 蔓草川(일제시대 이후 旭川)이 한강과 맞닿는 지역의 좌우, 즉 지금의 원효로 좌우가 대체적인 위치라 할 수 있는데, 당시 만초천이 만곡해 들어간 좌우 천변이 목재의 저류지로서 적당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한강 제방이 축조되는 등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된 오늘날 당시의 목재 저류지의 정확한 위치를 찾기란 쉽지 않다. 다만 당시 행정구역상 西部 龍山坊에 속한 지명을 통하여 대체적인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데, 磤項, 沙村, 沙湖, 新昌契,¹⁰⁾ 中村,¹¹⁾ 車場里¹²⁾ 등이 그 예들이다.

우선 탄항에 대해서는 일찍이 성종 연간부터 매년 적치된 토사의 제거를 통하여 정박의 편리를 도모한 곳으로서¹³⁾ 일찍부터 수운과 밀접

하 전함사 조, 1996, 서울, 솔출판사, p. 147 참고

8) 민족문화추진회 편, 앞의 책, 비고편 동국여지비고 제2권 한성부 시전 조, p. 424 참고

9) 孫禎睦, 앞의 책, p. 262

10) 『景慕宮改建都監儀軌』, 甘結 丙申 7월 초8일 조, “所入木物 盡爲卸下於西部龍山坊新昌契”

11) 『懿昭廟營建儀軌』, 甘結秩 壬申 6월 22일 조, “此本廳 私儲取用是在 龍山中村慶哥稱名人 樓柱三十六株 龍山金哥 樓柱二十三株載運時...”

12) 『貞殿重修都監儀軌』, 甘結 癸亥 12월 18일 조 참고

한 관련이 있던 마을이었다. 실제 영조 연간의 진전증수공사(1748년)에 소입목재의 일부는 용산 탄항계에서 수입하였으며,¹⁴⁾ 1883년 일인거류지의 개설 후보지 물색을 위해서 일본공사가 본국 외무대신에게 보낸 機密信 제21호에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강안에 이르니 마포의 좌에 위치한 작은 산의 배후에 접한 곳이 즉 지명을 용산이라 하고, 그 중의 한 마을을 탄항계라 부른다고 함. 남대문에서 이 지점에 이르기까지 대도평탄하여 산언덕 하나 없고 차마의 윙래가 자유로와 현재도 강원도 방면에서 재목을 적출하여 경성에서 사용하는 것은 모두 이곳에서 우마로 운반한다.”¹⁵⁾고 하였다. 탄항은 대동여지도에 용산으로 표기된 곳의 우측 하단이며 육천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목물 거류지로 자주 거론되는 사촌은 표기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탄항은 다른 마을보다 컸다고 여겨진다.

탄항은 대동여지도의 위치만으로는 대략 지금의 이촌동 일대에 해당하지만, 1914년 4월 1일자 경기도 고시 제 7호의 「京城府町洞의 명칭과 구역 通定」에 따르면 이전의 탄항 일부와 兄弟井 일부를 합쳐서 元町 四丁目으로, 또한 탄항 일부와 兄弟井 일부, 桃花外洞 일부를 합쳐서 山手町으로 통폐합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沙村里와 新村里, 新草里를 합쳐서 二村洞으로 개편하였기¹⁶⁾ 때문에 이촌동과 전혀 다른 위치임을 알 수 있다. 즉 1915년에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1/10,000 축척의 『朝鮮地形圖集成』의 元町 四丁目과 山手町은 당시 旭川의 서북변의 모래밭 건너서 川邊을 따라 帶狀으로 형성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육천이 한강과 합류하는 일대의 천변을 탄항이라 했고, 오랫동안 이곳은 목재 등의 수운과 저류지로서 존속했음을 알 수 있다.

13) 『成宗實錄』, 권 177, 16년 을사 4월 갑자조, 동 4월 기사조, 동 5월 무오조 참고

14) 『貞殿重修都監儀軌』, 甘結秩 참고

15) 孫禎睦, 『韓國 開港期 都市變化過程研究』, 一志社, 1984, 서울, p. 255에서 전재

16) 『京城府史』 제 3권, 조선총독부, 1934-41, p. 535

일제 초기의 기록에 “어느 때부터인가 이촌동 강안에는 일 부락이 생겨나서 1915년을 전후해서는 호수 5·60호에 이르렀고, 재목업을 영위하며, 舊 용산 주민과 함께 옥천의 양안에 계류된 재목을 취급하였다.”¹⁷⁾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구용산이란 곳이 바로 탄항을 지칭하며, 저류지는 옥천 연변임을 알 수 있다. 이곳을 궁궐목수였던 고 배희환 용은 터진개로 회고하였다. 지금의 용산구 원효로 4가 언저리로서, 아마 한강에 터져 있는 개천¹⁸⁾이라고 해서 붙여진 옥천의 다른 이름으로 생각된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언급된 이촌동은 탄항과 함께 영선목재의 대부분을 취급하던 곳이었다. 위의 일본인의 언급대로 이곳은 목재를 취급하던 상인이나 공장들이 모여 살면서 그 연변과 옥천 양안에 계류중인 목물을 치목·판매하던 곳으로서 중요한 곳이었다. 이촌동은 1914년 4월 1일자 경성부 고시에 따라서 종래의 신창리, 사촌리, 신촌리가 통합되어서 생겨난 명칭으로서¹⁹⁾ 특히 주목되는 곳이 바로 사촌리다.

사촌리는 조선후기로 오면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목재 취급소였다. 예로서 창경궁영건공사(1834년)는 총 공사비 131,200냥 중의 1/6에 해당하는 21,200냥²⁰⁾의 목재를 사촌리에서 수입해 쓰는데, 이곳에서 먼저 초치련작업을 끝낸 부재를 궐내로 반입하고 있다.²¹⁾ 따라서 이곳은 목재 계류보다는 초치련 작업에 의한 중간부재를 취급하는 제재소 성격의 치목작업소가 있었으며, 이를 담당할 치목공장들이 활동하던 곳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많은 공사에 사촌리의 목재가 공급되고 있는데, 특히 1904년의 경운궁증건공사에 소요되는 목재의 상당수는 이곳에서 조달되었다.²²⁾ 목재 중에는 체목은 물론이고 치련을 끝낸 부재가 상

17) 『京城府史』 제 4권, 조선총독부, 1934-41, p. 1035

18) 배희환 구술, 「이제 이 조선톱에도 녹이 슬었네」, 『뿌리깊은 나무』, 1981, p. 37

19) 『京城府史』 제 3권, p. 535

20) 『昌慶宮營建都監儀軌』, 营建都監匠料及實入雜物折價數條

21) 『昌慶宮營建都監儀軌』, 甘結 戊午 3월 조

22) 『慶運宮重建都監儀軌』

당량에 달하는²³⁾ 것도 이곳에 치목소가 운영되고 있었음을 증명한다. 고 배희환 용의 증언과 같이 터진개, 즉 옥천 연변의 재목을 물으로 옮겨서 치목이 주로 행해지던 곳으로서 조선시대 죄인을 참수하던 새남터(沙南基) 자리였다. 1902년에 한강의 좌안 구용산 옥천 좌안의 땅에 瓦斯工場을 건립했는데, 완공된 와사제조소와 대형의 원통 탱크의 경관을 “종전까지 상류에서 유하된 뗏목들의 계류지였던 砂原에 一偉觀을 現出했다”²⁴⁾는 기록과 1915년 조선총독부에서 제작된 지도에서 찾아 보면, 옥천의 남변에 표기된 와사공장과 그 앞에 모래톱에 의해 생긴 긴 호수 일대가 정확한 지점이 될 것이다. 이를 도시해 보면 그림-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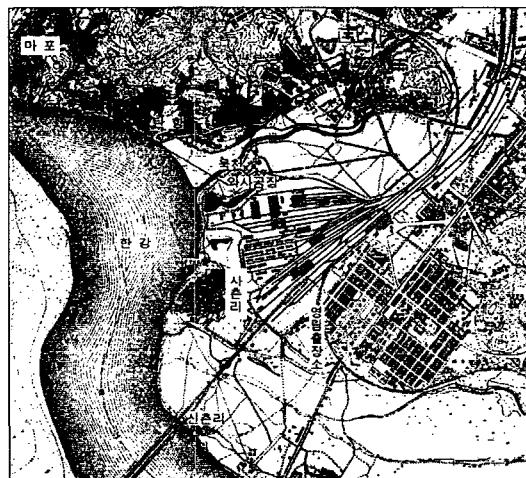


그림-1. 조선총독부 제작 용산강변 일대 지형도²⁵⁾

탄항이나 사촌 외에도 주변의 중촌, 거장리 등도 목물을 취급한 곳으로 거론되기도 하나 미미한 정도이다. 다만 뚝섬의 경우는 영선목재도 취급했으나, 오히려 船材를 주로 취급한 곳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산업화 이전까지도 뚝섬이나 지금은 없어진 밤섬에는 선박건조에

23) 『匠役記綱』

24) 『京城府史』 제 4권, p. 1043

25) 朝鮮總督府作製, 一萬分一 朝鮮地形圖集成, 栢書房, 大正四年, 測圖 京城(其二)를 재편집한 것임

종사하는 선장 등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기²⁶⁾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목재저장지는 특정의 한 지역만은 아니었다. 용산강 일대, 즉 탄항, 옥천의 좌우 연변, 그리고 지금의 이촌동이 그 중심이었으며, 그 배경에는 일찍부터 수운의 편리성과 함께 도성으로의 반입경로가 다른 곳에 비해서 훨씬 편리한 지리적 이점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주변으로 많은 국용창고가 밀집해 있었고, 부근의 盤松坊에 車子里契²⁷⁾가 위치한 것도 저류된 목물을 비롯한 각종 공물을 도성내로 운반하는 것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조선후기의 빈번한 궁궐조영에 소용되는 목재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서 관원이 파견되기도 하였다. 예로서 효종 3년(1652)의 창덕궁과 창경궁 수리공사 때 소요재목을 求得하기 위하여 都監의 監造官이 용산에 파견되어 이곳에 적치된 재목들을 看審토록 하였다. 당시 관리의 보고 내용 중에 “이미 많은 재목을 內需司와 諸宮家에서 着標해 두었다”고 했으며, 이에 왕이 “강변의 허다한 재목이 어찌 모두 이들의 것이겠는가? 어느 것을 물론하고 먼저 取用한 후 紿價하라”²⁸⁾고 하였듯이 각 관아에서 확보해 둔 목재는 물론이고 내수사와 궁가에서 절수한 것조차도 이곳에 적치되었을 뿐 아니라 그 중 상당량이 세력가들의 소유로 낙인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철저한 松政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빼돌려지는 물량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역시 보름이 지난 후 경강에 載泊한 목재를 도감으로 운반해 들이기 위해 도감 郎廳을 江頭, 즉 용산강의 목재저장지로 보내는²⁹⁾ 등 목재의 관리를 위하여 관원을 파견하기도 하였는데, 대개 書員과 창고지기의 업무를 수행하였

26) 배희환 구술, 앞의 책, p. 39

27) 『仁政殿營建都監儀軌』 甘結 癸亥 12월 18일 조, 『眞殿重修都監儀軌』 甘結秩, 『京城府史』 권3 p. 521과 권4 p. 1093. 당시의 지명 또는 부락명 중에는 같은 일에 종사하는 이들의 집단과 관련된 것이 많았다. 車子里契도 그 하나로 짐작된다.

28) 『昌慶宮昌德宮修理都監儀軌』, 傳敘 정월 22일 조

29) 『昌慶宮昌德宮修理都監儀軌』, 傳敘 2월 초5일 조

으나, 부재의 조량을 위해서 도편수 등이 직접 파견되는 경우도 있었다. 즉 저류된 목재를 관리하기 위한 木物所³⁰⁾나 재목소에 서원과 창고지기를 파견하였으며, 목재를 도성 내로 운반하기 위한 運木所³¹⁾라는 사무소를 이곳에 설치하기도 하였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경강변이 조선전기에도 목재를 취급하는 목재상들의 활동처였다는 것이다. 성종 연간의 기록³²⁾에 “臣等이 몰래 동서兩江을 살펴 보니 엄청난 뗏목이 줄지어 사사로이 파는 재목으로 그 수가 천을 해아리니, 관리를 파견하지 않으면 실로 해가 될 것이다” 하고 있다. 여기서 동서兩江이란 용산강 좌우의 경강을 말하며, 이 일대가 목재의 집결지로서 목재상들이 상당량을 취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조선전기의 경강변을 중심으로 목재상들에 대한 기록은 자주 확인되는³³⁾ 바이는 다음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1-2. 목재의 水運經路

경강변의 영선목재는 조선왕조의 신도건설과 밀접하게 관련될 뿐 아니라 이러한 관계는 이후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서 유지되었다. 한양천도와 함께 경복궁과 종묘의 건설을 비롯한 각종 조영에 소요되는 목재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서 외도산지에서 차별된 목재를 수운으로 집적하여 성내로 반입하는 데는 여기보다 나은 곳은 없었다.

조선초기의 영선목재는 비교적 서울의 인근 지역에서도 쉽게 확보할 수 있었지만, 임란 이후 산림의 황폐화가 가속되면서 수급사정은 크

30) 『仁政殿營建都監儀軌』 畢目 附式例 甲子 2월 조, “龍山江運木所出往牌將餉錢給官使喚食價錢磨鍊後錄依此上下爲此後則每五日磨鍊上下…”

31) 『昌慶宮昌德宮修理都監儀軌』 昌慶1所 壬辰 3월 초5일 조, “兩闕修理時所用材木母論 公私儲爲先取用…即接木物所監役任允錫手本紙前近處趙士宗稱名人家有可合材木百餘條”

32) 『成宗實錄』 권177, 성종 16년 乙巳 4월 甲子條

33) 『中宗實錄』 권42, 중종 16년 辛巳 7월 甲戌條, 同 권 88, 중종 33년 戊戌 8월 甲寅條, 同 9월 己卯條, 同 권 95, 중종 36년 辛丑 4월 庚申條, 『光海君日記』 권153, 광해군 12년 庚申 6월 甲寅條에서 참고

게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목재의 산지도 차츰 전국 각지의 원거리로 넓혀 갈 수 밖에 없었다. 특히 임란으로 황폐화된 궁궐의 복구공사에는 소요되는 재목도 큰 치수의 체대목들이 많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체대목은 강원도 등의 산간에서 얻을 수 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렇게 먼 거리를 서울까지 운반해 오는 일이었다. 그래서 작벌지의 선정은 일차적으로 재목의 유무이겠으나, 운반의 편이도 중요한 변수였다.³⁴⁾ 즉 육로만으로 원거리를 운반해 오는 것보다는 작벌된 재목은 가까운 浦口로 내려서 선박으로曳運하거나 뗏목으로 엮어서 방류하여 경강변의 목재 집하장에 모은 후 서울의 공사처로 운반하였다. 다만 경기도의 고양, 양주 등지에서 생산되는 기계목용이나 가가용 잡목 등은 단거리의 육로로 운반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체대목의 육로 운송은 방류지까지만으로 한정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리면 산지에서 작벌된 목재가 이러한 경로를 통하여 용산강변까지 운송되어 공사지로 반입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 보자.

우선 현종 7년(1667) 영녕전개수공사에서 소요목재를 전라·충청·황해·원양·경기도에 지정하였는데, 선박으로 봄을 기다려 올려 보내라 했으나, 각 도 감영에서는 허다한 목물을 육운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해빙을 기다려 선운하겠다고 하였다.³⁵⁾ 이러한 목재는 가을에서 겨울철에 벌목한 후 해빙이 되고 물이 불어나는 때를 기다려 水上으로 실어 내리게 되는데, 강 상류에서는 뗏목으로, 그리고 충청·전라·황해 등지의 목재는 해상로를 따라서 선편으로 강 하류로 운반하여 경강변에 집적하게 된다.

34) 예로서 『光海君日記』 권 134권 10년 戊午 11월 乙卯條 “營建都監啓 伊川居前郡守高忠卿 前日自言伐木之策 ... 중략..我國二百年來 未聞研伐於遂安谷山等地者 誠以運路難便故也 今其所言如此 請都監監役官一員 紿馬下送 帶同忠卿往審材木有無及 道路便否而來 更議處置” 참고

35) 「永寧殿改修都監儀軌」 啓辭 丙午 10월 26일 조, 동丁未 4월 초10일 조, 移文 丙午 10월 초2일 조, 동丙午 10월 초7일 조, 동 25일 조 참고

여기서 조선후기의 각도로 지정된 官需木材가 반입되는 과정을 보자.

우선 강원도는 가장 많은 목재가 지정되었는데, 이는 많은 목재가 생산될 뿐더러 강 상류에서 뗏목으로 흘려 내려서 경강변에 정박시키는 것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시간적으로나 공역이 절감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강원도는 거의 대량이나 추녀, 고주와 같은 체대목 뿐 아니라 각종 목재들이 많이 지정되었다. 춘천, 횡성, 원주, 정선, 평창, 영월, 인제, 낭천, 양구 등지에서 작벌된 목재를 해당 포구로 끌어 내리고 이를 뗏목으로 엮어서 경강변 목재 저류지에 이르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로는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각 기점의 해당 영읍의 수령으로 하여금 운송을 책임지도록 하였다.³⁶⁾ 남한강 수로를 이용한 예로서, 순조 4년(1804) 인정전영건공사에서는 인제, 평창, 영월 등지에서 작벌된 목재를 뗏목으로 엮어서 유하하는데, 영월 錦江에서 원주 興原江까지의 領運差使員은 평창군수 李豐林이 감동책임을 맡고, 여기서 低平江까지는 원주판관 沈誠이 맡으며, 지평강에서 용산강까지는 고성군수 朴尙榮이 맡아서 책임 운송 토록 하였다.³⁷⁾ 해당 지방관에게 목재운반을 책임지워 유실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송과정의 沿江에서 무뢰배나 목재상 등에 의하여 도난당하는 경우도 많았다.³⁸⁾ 그래서 목재에 낙인이나 着標를 해두기도 했지만 해당 지방관들조차 이들과 결탁하여 목재를 빼돌리는 경우도 있었다.³⁹⁾

북한강 수운의 예로 화성성역에서는, 상류의 金城과 楊口는 산골물이 얕고 험해서 뗏목을 엮지 못하고 날개로 떠내려서 狼川의 芳峴浦나

36) 「仁政殿營建都監儀軌」 來關 甲子 3월 조

37) 「仁政殿營建都監儀軌」, 來關 甲子 3월 일조

38) 「懿昭廟營建廳儀軌」 移文 丙申 7월 18일 조, 「景慕宮改建都監儀軌」 甘結 丙申 7월 초8일 조, 「昌慶宮營建都監儀軌」 條目 癸巳 11월 조

39) 이에 대해서는 『朝鮮王朝實錄』 경종 2년 10월壬申조, 동 현종 원년 11월 1일壬子 조 등 빈번하게 확인된다.

南江에서야 뗏목으로 엮어 방류하였다.⁴⁰⁾ 봄이 되었으나 상류지역이라 물이 불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강원도 관찰사의 狀啓에는, 고주, 체목, 대연목을 합한 188주를 금성현에서부터 4개의 뗏목으로 엮어 흘러 내린 것이 6월 초9일에 춘천 地境을 지나고 있다. 10월 19일의 狀啓에는, 2월에 시역해서 4월 18일부터 10월 초2일까지는 재목을 띄워 내렸으나, 江水으로 인하여 10월 중순부터 운반이 불가능하여 봄을 기다려 발송할 뜻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한강수로를 이용한 목재운송은 대개 음력 4월 중순부터 10월 중순 사이에 이루어지며, 그 중간에도 장마 때는 제외되었다.⁴¹⁾

또한 운송과정에서 목재의 운송 形止를 제대로 보고치 않아 해당관리에게 무거운 형벌을 내리기도 하는⁴²⁾등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한편 해상경로를 이용한 전라도, 충청도, 황해도의 경우는 포구로 내려진 목재를 선박으로 운송하였다. 전라도는 체대목이 주로 지정되었는데, 이때 兵·防船의 公船을 주로 이용하지만 때로는 私船으로 서해안을 돌아서 한강 하구를 거쳐 경강에 到泊토록 하였으며,⁴³⁾ 가끔은 조세선이 이용되기도 하였다.⁴⁴⁾

황해도는 대개 서까래와 재절목이 지정되었는데, 주산지는 장산곶이었다. 장산곶에서 각 邑津의 수십척의 兵·防船에 나누어 싣고 五叉浦(현재 황해도 長淵郡 海安面) 앞바다에서 聚會한 후 騎船을 앞세워 領運토록 하였다.⁴⁵⁾

충청도는 주로 체대목이 지정되었는데, 주된

40) 『華城城役儀軌』 권3 狀啓 甲寅 4월 26일 조. 同 乙卯 7월 11일 조

41) 『華城城役儀軌』 권3 移文 甲寅 4월 25일 조 참고

42) 『華城城役儀軌』 권3 移文 甲寅 6월 13일 조 참고

43) 『仁政殿營建都監儀軌』 移文 甲子 4월조. 同 來關 甲子 정월조. 同 2월조. 『西闕營建都監儀軌』 移文 庚寅 2월조. 『華城城役儀軌』 권3, 狀啓 甲寅 3월 초2일 조 참고

44) 『華城城役儀軌』 권1, 啓辭 癸丑 12월 18일 조. 同 권3, 狀啓 甲寅 3월 11일 조

45) 『華城城役儀軌』 권3 狀啓 甲寅 3월 초2일 조.

산지는 안면도였다. 역시 각 營·邑·津의 兵·防船을 이용하고, 兵·防船 한 척의 적재량이 元材木 10주 전후로서 시일에 쫓길 때는 私船을 징발하기도 하였다.⁴⁶⁾

이렇게 해로를 통하여 운송할 때는 해당 영읍에 대해서 그 책임을 철저히 물었으며, 도감 등에서도 領運差使員을 정해서 이를 감독하였다. 그래서 發船日字, 船隻數, 사공과 격군의 성명, 적재재목 등을 成冊하여 해당 관찰사·수사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고, 연변 각 읍에 어느 일시에 어떤 목재가 어느 지방을 거치는가에 대해서도 보고토록 했던⁴⁷⁾ 것이다.

그러나 해로를 통한 목재수송은 폭풍우와 같은 재난으로 순탄치 만은 않았다. 한 예로 순조 4년(1804) 인정전영건공사의 목재를 충청도 安興鎮 선박에 싣고 오다가 南陽府 雲興島에서 비바람으로 부서져 沙格 몇 사람이 죽고, 재목을 漂失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표실된 만큼의 재목을 안면도에서 다시 斫取토록 한⁴⁸⁾ 경우 등은 빈번하게 발생했다.

경기도의 경우 지정된 목재는 서까래, 機械木用 소재목이나 잡목에 불과하나, 강변과 가까운 곳과 강화도 등지는 역시 수운으로,⁴⁹⁾ 그리고 강변에서 먼 곳은 육로로 직접 운송하였으나, 그 양은 많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수송되어 온 목재들은 대개 경강변의 사촌리나 탄항계와 같은 마을의 洞任이나 의도고 주인들이 나가서 결박하거나 물으로 끌어 올려지게 되며,⁵⁰⁾ 경우에 따라서는 관리가 파견되어 이를 감독하기도 했던 것이다.

한편 각 도로부터 수운을 통해 운반되어 용

46) 『華城城役儀軌』 권3 狀啓 甲寅 4월 초1일조 등 참고

47) 『仁政殿營建都監儀軌』 移文 甲子 9월 조. 同 來關 甲子 정월조. 同 2월조. 『西闕營建都監儀軌』 移文 庚寅 2월조. 『華城城役儀軌』 권3, 狀啓 甲寅 2월 12일 이후 여러 條 참고

48) 『仁政殿營建都監儀軌』 移文 甲子 4월 조. 同 來關 甲子 2월 조

49) 『華城城役儀軌』 권3 移文 甲寅 정월 22일 조

50) 이에 대해서는 『懿昭廟營建廳儀軌』, 啓辭秩 壬申 6월 21일 조, 同 移文秩 壬申 7월 18일 조. 참고

산강변 일대에 저류된 목재들은 때로 체목으로, 때로는 초치련작업을 마친 후 車馬를 이용하여 도성내로 반입된다.⁵¹⁾ 순조 4년의 인정전 영건공사를 예로서, 전라도, 충청도, 황해도, 강원도, 경기도에 목재를 지정하였다. 계해년 12월 18일 甘結條에 영건소용 목재가 용산강변에 차례대로 도박하였는데, 목재를 도감 영건소까지 수레로 반입하기 위해서 왕래할 차로를 修治하였다. 즉 운반차로는 용산강변, 萬里倉, 驛馬橋, 南初橋, 南大門, 都監으로서⁵²⁾ 지금의 원효로를 통하여 숭례문과 창덕궁으로 이어진 경로로서 만리창을 통과한 것으로 보면 목재는 탄항방면, 즉 육천 연변에서 반입된 것으로 생각된다.

1904년 경운궁중건공사에서는 사촌리에서 많은 물량을 반입해 오는데, 이를 위해서 숭례문에서 사촌리까지의 도로를 보수하는⁵³⁾ 등 일시에 대규모 공사가 추진될 때는 많은 양의 목재 수송을 위해서 운송로의 정비는 필수적이었다.

경강변의 목재를 도성내 공사현장으로 반입하는 수단은 소나 말이 끄는 수레였다. 수레는 재목의 종류별로 그 수를 정하는데, 예로서 別大不等木, 大不等木, 廣厚板, 樓柱, 材木 등으로 구분하여 운반하였다.⁵⁴⁾

수레 운역에 대해서는 적정 役價를 지급하였는데, 예로 영조 40년(1764)의 수은묘영건공사에서 京中の 漢車는 매 10리당 호조의 예에 따라서, 軍車夫는 매월 매명당 木 2필, 매일당 輛

牛養太 5昇을, 그리고 용산거주의 車夫色掌에게는 매월 목 2필을 지급하였다.⁵⁵⁾ 다만 車夫가 소의 수척함을 이유로 1일 한번 왕복을 고집한 일을 치죄한 것⁵⁶⁾으로 보아 1일 2번 정도의 왕복운송이 일반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⁵⁷⁾

이러한 수레는 한성부 소관의 것이 이용되었으나, 물량이 많을 때는 軍門과 各宮 및 민간의 수레까지도 동원되었다.⁵⁸⁾ 각종 물산의 집산지인 용산 주변에서는 이미 수레운반을 전문으로 하는 운역군이 생겨 났으며, 이들은 車契를 조직하여 도성내로의 운반을 담당했다. 예로서 영조 24년(1748)의 진전중수공사에서는 거계 인부들이 삼영문 車夫들과 함께,⁵⁹⁾ 그리고 1752년의 의소묘 영건공사도 거계가 운송을 담당하는⁶⁰⁾ 등 목재의 운송과 관련한 전문업종이 생겨나기도 했던 것이다.

3. 경강목재의 공급

3-1. 官需用 목재공급

조선시대 서울에서 사용하는 영선목재는 그것이 궁궐이나 관아건축을 위한 관수용이건, 또는 私家의 건립을 위한 민수용이건, 그리고 공납에 의해서건, 목재상들의 매매에 의해서건 거의 모든 목재가 경강변을 통해서 공급되었다. 특히 관수용은 물량에 있어서나 치수에 있어서 민수용이 비할 바 못될 뿐더러, 엄정한 수급계획에 따라서 조달되었다.

여기서 경강변을 통한 관수용 목재의 조달내

51) 「仁政殿營建都監儀軌」, 移文 甲子 9월 조, 同來關 甲子 정월 조, 「西闕營建都監儀軌」, 移文 庚寅 2월 조, 「懿昭廟營建廳儀軌」, 移文 秋壬申 7월 18일 조

52) 「仁政殿營建都監儀軌」, 甘結 癸亥 12월 18일 조, 「右甘結爲今此營建材木今方陸續輸入是似乎往來車路不可不修治南大門內外磚石之險陥處南初橋驛馬橋等橋板之縫隙萬里倉前沙汰處各該部嚴飭各其洞任可以補土則…」

53) 「慶運宮重建都監儀軌」, 照會 甲辰 6월 23일 조

54) 「永寧殿修改都監儀軌」, 移文 秋 丁未 4월 초 7일, 「江上劈鍊材木輸入車子數… 중략…稟堂上手決內 大不等雖…體大既已初鍊則 牛隻磨鍊之數 似爲過多 別大不等車牛六隻 大不等車牛四隻 以該爲載運 觀其輕重有所加減宜當」, 또는 「慶德宮兩處修改所入木物輸入車子磨鍊 則廣厚板十五立 輸入次京車二輛 樓柱六條輸入次 龍車六輛 材木二十五條 輸入次龍車六輛是去乎」

55) 「垂恩廟營建都監儀軌」, 甘結 秋 甲申 정월 23일 조

56) 「南別殿重建廳儀軌」, 甘結 丁巳 3월 초 1일 조, 「入役車夫等設置皆稱車牛瘦瘠一日所載不過一度各別治罪」

57) 이에 대해 인조 11년의 「昌慶宮修理都監儀軌」, 一日輸運巡數條에서는 「仁慶宮四巡 慶德宮四巡 備邊司五巡 昌慶後苑十二巡 於義洞十二巡 龍山二巡 頭毛浦二巡 箭串二巡 麻田浦二巡 繖島二巡」이라 하여 거리에 따라 왕복 회수를 정하고 있는데 용산을 비롯한 경강변까지는 2회 왕복임이 확인된다.

58) 이에 대해서는 「南別殿重建廳儀軌」, 啓辭 秋 丁巳 3월 15일 조, 「垂恩廟營建都監儀軌」, 移文 秋 甲申 2월 초 3일 조 등에서 참고된다.

59) 「懿昭廟營建廳儀軌」, 甘結 秋 壬申 6월 21일 조

60) 「眞殿重修都監儀軌」, 甘結 秋 癸亥 12월 18일 조

역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관영공사의 목재수급 계획과 이에 따른 조달내역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공사규모와 일정이 정해지고, 소요 인력과 각종 물자를 마련하는데, 물자 특히 목재의 수급상황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 開基, 定礎, 立柱, 上樑으로 이어지는 공정과 각 항 일시의 추택도 궁극적으로는 목재의 원활한 수급에 맞추어서 정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재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 가기 전에 해당목재 산지에 공문을 보내거나 경강변 저류지에서 목재를 간접하게 된다. 당연히 적당치수의 목재를 구하지 못할 경우는 공사 자체가 중지될 수 밖에 없었다.

한 예로서, 순조 5년(1805) 인정전영건공사를 들 수 있다. 이 공사는

계해 12월 27일 開基始役 및 定礎始役

갑자 3월 1일 材木治木始役

동 15일 儒臣疏 停役

동 8월 20일 更爲治木

동 9월 9일 更爲定礎 및 機械始役

동 10월 9일 立柱

동 27일 上樑

동 11월 6일 上下層丹青

동 8일 蓋瓦始役

동 15일 畢役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⁶¹⁾ 그런데 治木始役은 갑자 3월 1일이지만, 확보계획은 이미 그 앞 해 12월 17일에 수립된다. 提調 호조판서 李晚秀의 啓에, “봄에 영건할 것인데 소입재목은 예전에 매번 그랬던 것처럼 海西의 장산곶, 湖西의 안면도에서 取用하나, 두 곳에 體大木物이 반드시 있지는 못하므로 관동과 호남의 封山 및 諸島木物 중 여유있는 곳에서 일체 取用할 것을 臣曹에 명하여 부역공장을 보내서 취용도록 하였다. 거행과정에 어려움이 따라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차라리 말고, 濫斫하여 백성에 근심끼치지 말 것을 備局에서 해당 道臣에게 知委해 差員의 입회 하에 斂取, 領運, 上送할 것을 仰達한다”⁶²⁾고 하였다. 이에 해당지역에서

는 지정된 木物에 대해 株數, 長短圓徑尺, 下去木手, 斫伐形止 등을 적어 보고하는⁶³⁾ 순서를 밟고 있다.

목재조달계획은 공사 전에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 호조나 도감에서 해당도에 關文을 보내어 지정량을 조달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비변사에서 看儉木手를 내려 보내고, 지시를 받은 해당 도에서는 差員으로 하여금 재목의 작취 및 운반상황을 상세히 보고하게 하였다. 이러한 산지지정의 경우 목물가나 운송비등은 해당 도에서 중앙에 貢納해야 할 결세 등의 公錢에서 제하고 會減하는 형식을 취하므로 이를 담당하는 곳도 호조였다.⁶⁴⁾ 都監提調나 堂上, 郎廳을 호조의 判書나 正郎이 맡는 경우가 많은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⁶⁵⁾고 짐작된다.

이러한 목재공급절차는 당시의 거의 모든 관영공사에서도 다를 바 없다.⁶⁶⁾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경강변에 집류되는 지정 목재의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 보자.

먼저 지정에 의한 공납의 경우, 현종 7년(1667) 영녕전수개공사에서 목재는 전량이 강원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황해도로 지정 조달하였다. 여기서 최종 할당된 각 도별 목재의 종류와 수량을 정리하면 다음 표-1과 같다.

이를 보면 애초 목재의 사용처와 치수를 정확히 설정하고 여기에 맞는 목재를 요구하고 있다. 원래는 강원·충청·전라도가 공히 대부

62) 『仁政殿營建都監儀軌』 承傳 癸亥 12월 17일 조

63) 『仁政殿營建都監儀軌』 移文 癸亥 12월 20일 조 참고

64) 『仁政殿營建都監儀軌』 粟目 甲子 정월 조, 『西闕營建都監儀軌』 承傳 己丑 11월 13일 조, 『昌慶宮營建都監儀軌』 粟目 癸巳 11월 조, 『垂恩廟營建都監儀軌』 粟目 戊午

65) 『懿昭廟營建都監儀軌』, 『垂恩廟營建都監儀軌』, 『景慕宮改建都監儀軌』, 『仁政殿營建都監儀軌』, 『昌慶宮營建都監儀軌』, 『西闕營建都監儀軌』 등의 座目條 참고

66) 『西闕營建都監儀軌』 承傳 己丑 11월 13일 조, “備邊司達旦即接戶曹所報則西闕改建材力預先措備然後…惠廳錢,

禁御兩營錢, 海西勅錢, 湖南山城軍餉穀折米, 壬戌穀折米, 海西勅需穀折米 爲先割給使之從便取用何如 令曰依”, “又達旦即接戶曹所報則西闕改建材木依例卜定爲事矣…各道分排預須經紀體木限二千二百株綠木限七千箇量宜派定於三南海西關東等松田使之斫取上送…”

61) 『仁政殿營建都監儀軌』, 各項目時條

등 11조씩 및 기타 목재가 할당되었으나, 최종 수량은 약간의 변동이 생겨서 가장 많은 양이 할당된 지역은 전라도와 충청도로서 체대목 뿐 아니라 소부재들도 할당되었으며, 강원도는 주

표-1. 永寧殿修改工事 各道 卜定 木材一覽表⁶⁷⁾

木材(단위)	규격(尺) 長, 壓	강원	전라	충청	황해	경기
大不等(條)	20, 2.4	10	18	12		
中不等(條)	16, 1.9	10	10	10		
小不等(條)	16, 1.6	20	50	50	40	
樓柱(條)	14, 1.4	100	60	60	40	
大材木(條)	10, 1		70	10	27	
大椽木(箇)	24, 0.6		170	130	200	
廣厚板(立)	15, 0.4		70	30		
機械木 등 雜 木(條,箇,立)		16條, 64箇, 169立		56條, 500箇, 228箇, 63立		
합 계		156條, 64箇, 169立	208條, 170箇, 70立	142條, 130箇, 30立	163條, 700箇, 228箇, 63立	

로 체대목이 할당되었다. 반면 황해도는 소부 등 이하의 소재목이, 경기도의 경우 機械用材 와 석공사 때의 擔機나 수레, 가가의 건설에 소용되는 잡목이 할당되었다. 이러한 수량 변동은 중앙의 지정량에 맞출 만큼 충분한 목재를 얻지 못할 경우로서 대신 다른 종류의 목재를 첨가하는 대신 체대목을 감하기도 했던⁶⁸⁾ 것이다. 그런데 전라도의 경우 대부등 18조 중 6조는 대들보용으로 각 長 25척, 廣 1척 8촌, 厚 2척 2촌으로 초치련하여 상송토록 하며, 역시 충청도에 대해서는 대부등 3조를 초치련 상송토록 하였다. 이미 수급계획상 용처를 분명히 명시하거나와 초치련작업까지 요구할 뿐더러 치수나 할당량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칙하기도 했다.⁶⁹⁾

67) 大不等은 주로 대들보나 추녀로, 中不等·小不等·樓柱는 기둥이나 도리 등에 쓰이는 구조재이다.

68) 「永寧殿修改都監儀軌」, 啓辭 癸卯 3월 15일 조 都監材木雜物磨鍊分定別單 및 丙午 10월 26일 조 참고

69) 「西闕營建都監儀軌」, 移文 己丑 11월, “各樣木物株數與長短圓徑尺量後錄發關去乎依此舉行爲有矣木品如或不合尺度如或不準裝運等節又或憑期則當該差員難免勸勘以此意各

특히 이러한 불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감소속의 목수들을 해당 작별지로 파견하여 벌목을 감독하기도 하였다.

순조 5년(1805) 인정전영건공사에서는 전라, 충청, 강원, 황해, 경기 등 5도에 목재를 지정하였는데, 각 지역별 할당목물과 下去木手를 보면, 전라도는 孫同賢, 충청도는 崔致良, 강원도는 金日祥, 金在明, 황해도는 申世甲이었고 경기도에는 하거목수가 없었다. 기계목이 할당된 경기도 외에는 모두 도편수급의 목수를 파견하여 척도에 맞는 목재를 골라서 작별토록 한 것이다. 실제 강원도 하거목수 金在明은 인제 寒溪洞으로 가서 적합한 송목들을 주수대로 封標하고 목수를 시켜서 기록 보고토록 하였다.⁷⁰⁾

그외에 특정 목재의 구득을 위한 하거목수의 파견은, 경운궁중건공사(1904년)의 경우 강원도로 대량 4주, 추녀 6주의 작취를 위해서 營繕司 委員 朴啓弘과 사환기수 1명을 파견하는 경우도 있었다.⁷¹⁾

한편 각 도 지정이 아닌 貢人이나 목재상으로부터 관수용 목재를 조달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영조 28년(1752) 懿昭廟營建工事의 경우, 관동 지정 목재 외 貢契, 公儲, 私儲 등 다양한 경로로 목재를 조달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2와 같다.

여기서 목재는 대부분 관동에 지정하여 조달한다. 당초 영건에 필요한 목재를 호조로부터 관동의 楊口, 狼川, 洪川에 지정하여 조달코져 하였으나 지체되는 관계로 外都庫 貢人이나 板契, 私儲와 公儲인 호조창고에 보관하던 목재를 일부 사용하였다.⁷²⁾ 私儲는 移文秩 壬申 6월 22일조의 기록으로부터 용산 소재 목재상을 지칭함을 알 수 있고, 私儲에서 조달한 樓柱 77주는 관동 卜定材木이 도착한 후 다시 되갚아 준다. 그런데 私儲의 목재상으로부터 관수

別嚴飭於各該地方邑鎮”

70) 『仁政殿營建都監儀軌』, 移文 甲子 2월 조

71) 『慶運宮重建都監儀軌』, 訓令 甲辰 7월 27일 조

72) 『懿昭廟營建廳儀軌』, 來闕秩 壬申 6월 25일조, 移文秩 壬申 6월 16일조, 同 7월 초6일조 등 참고

목재를 조달할 경우 목물가에 맞추어서 紿價하거나 목재로 되잖아 주는 것이 17세기 이후에는 상례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⁷³⁾

표-2. 懿昭廟營建工事의 목재조달내역⁷⁴⁾

材木(단위)	關東 卜定	貢契		公儲 (戶曹)	私儲	기타
		外都 庫	契人			
別大不等(株)	2					1
不等(株)	16					
樓柱(株)	77	45		77(還報)		
宮材(株)	72					
材木(株)	94					
大椽木(箇)	101				1	
小椽木(箇)	88					
長耳機(箇)	2					
中條里木(箇)		24				
小條里木(箇)		8				
楸木大條里(箇)			1			
楸木小條理(箇)			1			
修粧板(立)	13					
船板(立)					5	
廣松板(立)			4			
椴板(立)				11		
方五寸椴板			1			
栢子板(立)				5		
楸板(立)				3		
합계	465	77	7	19	77(還報)	7

外都庫는 官에 부정기적으로 营繕木材를 공급판매하던 貢人들의 공동출자기구인 貢契였다.⁷⁵⁾ 그럼에도 啓辭秩 壬申 11월조의 기록에

73) 「昌慶宮昌德宮修理都監儀軌」, 傳敎 정월 22일조, “自前各值修理之役則容入材木取用私儲或給價或以材木還償例也”

74) 別大不等은 대들보材이고 不等木은 合仗樑, 柱頭, 仇累臺, 朴工板으로 사용된다. 樓柱은 末圓徑 1尺 5寸, 長 20尺 내외로서 기둥, 從樑, 假樑, 昌方, 長舌, 道里 등 쓰임새가 다양한다. 宮材는 末圓徑 1尺 3寸, 長 20尺 내외의 재로서 士目, 솔대(松竹), 風遮板 등으로 쓰인다. 材木은 末圓徑 1尺, 長 10尺 내외로서 小露, 壁縫, 付椽, 木只 등으로 사용된다. 條里木은 樓柱, 宮材, 材木 등을 켜서 만든 方材로, 斑子, 斑子長大攔, 列大攔, 중깃(中衿) 등으로 쓰인다. 修粧板이나 廣松板은 覽板, 付椽蓋板, 檻阿只, 案初工, 立工 등으로 쓰이는 板材이다. 船板은 배에 사용되는 판재인 듯하나 규격은 알 수 없는데, 西芝로 쓰이고 있다. 椽板이나 楸板, 栢子板은 樹種에 따른 판재 분류이고, 주로 座檻이나 神檻 作造에 쓰인다.

75) 김동우, 「朝鮮時代 建築工事에 있어서 木材供給體制」,

서는 外都庫와 契人을 구별하고 있다.

이는 外都庫에 소속된 貢契人 외에 별도로 목재를 취급판매하는 조직의 존재를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의 하나로 주목되는 것은 板契와 條理木契인데, 貢人們의 판매조직이 부재별로 세분화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⁷⁶⁾ 즉 부재의 규격화에 따른 목재 상품유통시장의 일단면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기타 公儲인 호조 창고와, 예전의 공사인 墓所에서 사용하고 남은 일부 재목을 옮겨 쓰기도 하였다.⁷⁷⁾

이후의 순조 4년(1804)의 인정전영건공사의 경우 소입목재의 조달은 크게 卜定, 公儲, 貿用의 세가지로 구분되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3과 같다.

표-3. 仁政殿營建工事의 목재조달내역⁷⁸⁾

材木	卜定						公儲	貿用
	전라	충청	강원	황해	경기	평안		
體木	266	437	546				29	
椽木				674			743	
板材							185	3385 4713
雜木			300		1500	4	117	1376
方材							701	

이 공사도 다른 예와 같이 체목은 강원, 전라, 충청도로부터 지정하고 일부는 公儲인 호조 창고에서 조달하며, 한층 작은 부재인 연목은 黃海도 지정과 호조 비축물을 사용하였다. 판재는 대부분 호조의 비축물과 민간으로부터 매입하여 사용하고, 일부 唐家用 栢子板, 楸板,

大韓建築學會誌 28권 117호(1984년 4월), p. 47

76) 조선후기의 여러 기록에서 車契, 葛契 등이 자주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도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77) 「垂恩廟營建都監儀軌」, 甘結秩 甲申 정월 1일조에 의하면 別庫, 軍資監 소재 不等, 樓柱, 宮材, 材木 등을 売出해 사용하고 있고, 英祖 24년의 真殿重修都監의 경우 重修所用 各樣材木, 不等 等物을 御營廳倉, 戶曹分所, 繕工監分所, 別庫, 龍山 灘項契 等處에 소재하는 卜定木物로 取用한다.

78) 여기서 體木은 大樑, 高柱, 衝樑, 朴工, 平柱, 春舌, 平防, 昌防, 退樑, 蛇羅, 圓道里 등 길이 12~50尺, 末圓徑 1.2~3尺되는 구조재로서, 연목은 길이 22~50척, 末圓徑 0.8~1尺되는 서까래재이다.

般板은 평안도에 지정하여 조달한다. 역시 경기도의 경우는 기계용 잡목에 한정되어 있다. 여기서도 구조용재를 비롯한 대개의 재목은 각 도 지정을 통해 조달하고, 판재와 잡목의 경우 공儲와 민간에서 매입함을 알 수 있다.

조선후기에 이루어진 관영공사 중 기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공사의 목재조달내역을 시기, 공사종류, 공급처에 따라 도표화해 보면 다음 표-4와 같다.

표-4. 朝鮮後期 官營建築工事의 목재조달내역⁷⁹⁾

※ 단, 공급정도에 따라 (...多, ...中, ...少)로 표시

時期	工事名	卜定		貿用 舊材 仍用
		道	公儲	
仁祖11년(1633)	昌慶宮修理都監		·	···
仁祖26년(1648)	儲承殿			···
顯宗7년(1667)	永寧殿修改都監	···		···
肅宗3년(1677)	南別殿重建廳	···	···	
英祖24년(1748)	眞殿重修都監	···	·	···
英祖28년(1752)	懿昭廟營建廳	···	·	···
英祖40년(1764)	垂恩廟營建都監	···		···
正祖원년(1776)	景慕宮改建都監	···	·	···
正祖20년(1796)	華城役	···		···
純祖5년(1805)	仁政殿營建都監	···	···	·
純祖32년(1832)	西闕營建都監	···	·	···
純祖34년(1834)	昌慶宮營建都監	·	···	·
純祖34년(1834)	昌德宮營建都監	···	·	···
哲宗9년(1858)	南殿增建都監	···	·	·
高宗39년(1902)	中和殿營建都監	···		·
高宗43년(1906)	慶運宮重建都監	·	···	···

표에서 보는 바처럼 조선후기의 관영공사에서 일부 修理나 改建을 제외하면 대개 公儲를 포함한 지정으로 주로 조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중에서 각 도 지정이 없거나 미미하면서 주로 公儲에 의존하는 경우는 소규모 공사나 진행이 빠른 경우이다. 예로서 진전중수공사나 수은묘영건공사의 경우는 공사규모도 작

79) 公儲는 戸曹에서 卜定한 목재를 창고에 비축한 것이므로 卜定으로 분류했다. 貿用은 賢人이나 木商으로의 매입과 私養山 斫伐買人을 포함시켰다. 舊材仍用은 당해 또는 타시설물의 부재를 옮겨 오거나 改作 사용한 경우이다.

고, 개기에서 상량까지 각각 8일, 15일 밖에 걸리지 않고, 都監設置 이후 始役이 빨리 시작된다.

특히 경운궁중건은 대규모 공사이고 2년 여의 기간이 소요되었지만 공사는 아주 촉급하게 시작되어 각 도 지정을 통해서 목재를 조달할 여유가 전혀 없었다. 즉 경운궁의 거의 모든 殿閣이 광무 8년 2월 29일 화재로 전소된 이후 7일만인 3월 5일에 開基 및 治木始役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만큼 공저의 비축 물량과 貿木을 통해서 조달되기 때문이라 하겠다. 다만 그 중에는 적당량을 舊材로 仍用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한편 목재 貿用의 경우는 조선후기 전반에 걸쳐서 자료의 부족으로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었다고 여겨진다. 특히 대재목이나 체목은 예외로 하더라도 서까래재나 판재 등은 상당히 일찍부터 상품화되어 거래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순조 34년(1834) 창덕궁영건에서는 대부등과 같은 대재목에서부터 次大椽과 같은 소재목에 이르기까지 1.2~12냥/개으로 매입하기에 이른다. 이 외에도 창호목물까지 매입하는데, 창호목물가를 제외한 매입가는 24,760냥으로, 전체 공사비 143,210냥의 약 17%에 달하며, 전체의 50%의 비중을 차지하는 匠料費(71,980냥) 다음으로 많은 액수이다.

특히 경운궁중건(1904년)의 경우 이의 일부 공사에 해당하는 기록이지만 『中和殿行閣門所用物種價未撥冊』에서 소입 물종의 대부분에 대해서 목재상들의 納品價가 적시되고 있는데, 목재는 대량으로부터 中衿小椽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종류의 木物을 망라하고 있다. 해당 목물의 단가가 치련공역가를 포함해서 적시되어 일종의 견적으로서 제출되었다는 것은 목재의 상품화가 팔목할 정도로 이루어졌음을 짐작케 한다. 다만 전체 공사비를 알 수 없어 그 비중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목재상이 취급하는 품목은 한층 다양해지고 그 비중 또한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3-2. 목상의 목재판매

경강변 일대는 일찍부터 조운을 배경으로 가장 먼저 상업화가 이루어진 곳이다. 그런 만큼 국용공물로서 철저히 통제되던 목재의 경우도 경강변의 상업화 분위기를 외면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특히 철저한 통제 물품일수록 수요에 따른 공급은 부족할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내밀한 거래가 싹트기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목재의 고갈현상이 심해지고, 금산지정이나 송전보호와 같은 엄정한 송정이 취해질수록 목재의 공공연한 매매는 성행할 수 밖에 없었다.

경강변을 근거로 한 목재상들의 움직임은 부분적이나마 조선초기부터 나타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의 성종 16년(1485)의 기록⁸⁰⁾과 같이 목재상 소유의 수많은 뗏목이 경강변 일대에 적치되어 있다거나, 2년 후의 “사간원에서 啓하기를 재목을 사 쓰는 일에 폐단이 적지 않으니 이를 혁파해 달라고 하자, 왕이 이르기를 재목은 公家에 사용하는 것이 부족하므로 부득이 산처에서 사 쓸 수 밖에 없다”⁸¹⁾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아서 일찍부터 경강변에는 목재상들이 국용 공물 외에도 사사로이 목재를 판매하는 것이 성행하고 있었음을 알게 한다.

이후 조선전기에 용산강변을 중심으로 목재의 매매행위에 대한 내용은 종종 연간의 경우에 자주 확인되는데, 예로서 16년 7월 25일 갑술조에 “경강의 재목을 평시서가 강제로 사들여 공용으로 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있으며, 집을 짓고자 재목을 사려고 하는 자가 있으면 홍정을 붙여 매매하여 생업을 삼는 자가 있으나, 관의 고시가격은 일반 매매가 보다 크게 적어서 원망이 많다”고 하며, 당시 시중 재목가는 면포 20필이지만 貢貿하는 자가 사면 5필에 억지로 산다⁸²⁾고 하며, “선공감에 재목이 없다 하여 양강가의 사유재목을 지정하고 평시서로 하여금 값을 결정하여 사용하게

하자 백성들이 집을 지으려고 한없이 깊은 산으로 들어가 구사일생으로 재목을 구득하여 강에 띄워 내려 오는 것을 일체 빼앗아 버린다”⁸³⁾고 하였다. 이에 의해서도 경강변에는 많은 목물이 관아나 일반에게 판매되고 있었지만, 관청에서 혈값으로 사들이는 탓에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따라서 목재의 매매를 더욱 부채질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임란 이후 산림의 황폐화와 목재의 고갈현상은, 공납에 의한 목재의 공급마저도 어렵게 만들었다. 심지어 공납이 부과된 山郡居民들이 목재를 구하지 못하여 대신 면포를 바치거나, 지정된 지방관에서는 해당 백성으로부터 값을 거두어, 경강의 민간목상으로부터 목재를 사서 공납하는 사례마저 있었다.⁸⁴⁾ 즉 목재의 고갈현상과 반비례하여 목재의 시장화는 활발해져 갔던 것이다.

임란으로 인한 궁궐과 관아의 복구공사가 한창이던 광해군 2년(1610)의 기록에, “경강에 사는 사람들이 재목을 轉賣하여 생업으로 삼고 있는데 근래 諸宮家를 수리할 때 監役官 등이 하인을 거느리고 재목을 남김없이 찾아내어 공연히 억지로 빼앗고는 돈도 지불치 않는다”⁸⁵⁾라 하였으며, 4년 2월 15일 경진조에는 “대개 집을 지을 때는 三江의 개인적으로 비축한 목재에 의존하는데, 三江 백성들은 일생의 생계를 오로지 목재에 의존한다”고 하여, 경강변을 무대로 목재상들이 재목을 轉賣하여 생업을 삼을 정도로 활동이 활발하였다는 사실과, 민간의 목재판매를 官에서도 인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들 가운데는 禁山의 재목까지 작별하여 松板으로 여러 곳에 轉賣하는 사람도 많았고, 지방관이나 邊將까지도 지정주수를 초과한 濫斫이나 도벌하여⁸⁶⁾ 이를 경강변에

83) 『中宗實錄』 20년 7월 20일 丁丑條

84) 『中宗實錄』 권88 33년 戊戌 9월 乙卯條, “忠淸山郡材木已盡故山郡居民收合綿布貿于京江而納之 小樣之價至於綿布三十餘同云將不多時至於百同矣”. 『光海君日記』 권95 36년 辛丑 4월 庚申條, “且王子駙馬第宅材木分定於產材各官則可以無弊但以外方產材處今已盡斫不得已收價於民間貿納于京江…”

85) 『光海君日記』 2년 윤3월 戊申條

80) 『成宗實錄』 권177, 성종 16년 乙巳 4월 甲子條, “臣等竊以爲東西兩江 聯巨筏私販材木 無慮千數 不必遣官作弊行虛惠貽實害也”

81) 『成宗實錄』 권 203 18년 丁未 5월 辛亥條

82) 『中宗實錄』, 19년 4월 30일 조

서 전매하는 사례로 많았다.

특히 “각 사에서 목물을 배정하여 사사로이 요구하므로 도별이 성행함은 물론이고, 값을 보내어 구하는 자가 사방에서 운집하여 그 가격이 10배나 뛰었다”⁸⁷⁾거나, 광해군 11년의 기록에 “큰 홍수로 국가와 상인들의 목재가 떠내려 가서 이를 양천, 김포로 보내 일일이 건진 결과 재목 91조, 누주 10조, 소부등 8조, 대연 16개, 대토목 1조, 중연 4백개에 이르렀으며, 이는 인제의 박용준이란 자의 물건이기에 값을 쳐서 경덕궁으로 실어 나르도록 하였다”⁸⁸⁾는 기록과 같이 목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을 뿐 아니라 이를 轉賣함으로써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었으며, 그러다 보니 산지에까지 목재상이 진출하여 많은 물량을 확보할 정도였다.

이러한 사정은 경강변을 중심으로 한 목재를 상품으로 한 시장의 형성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그런 가운데 광해군 12년(1620) 인경궁영건에 필요한 재목을 구득하기 어려워 민간에서 대부분을 사들이는⁸⁹⁾것과 같이 관수용까지도 목재상으로부터 조달하고 있으며, 심지어 목재를 募納하기 위해 空名帖을 발부하여 경강의 목재상에게 적정주수의 납품을 대가로 관직을 주는 사례마저 있었다.⁹⁰⁾ 또한 空名帖으로 募得하는데 그 募納 주수가 적어서 강원도 각 官의 연례貢物을 목재로 代納하는 사례도 있다.⁹¹⁾ 이러한 사실은 17세기초의 산림의 황폐

86) 「光海君日記」 권153, 光海君 12년 庚申 6월 乙亥條

87) 「光海君日記」, 4년 2월 12일 庚辰條

88) 「光海君日記」, 11년 8월 12일 壬戌條

89) 「光海君日記」 권153 光海君 12년 更申 6월 癸丑條, “傳曰仁慶宮所入材木甚多而伐木難便則擇送勤幹解事郎廳于材木所在處今年內多般廣貿材木以用事”。 同 己酉條, “傳曰仁慶宮所造材木千餘條 自內備下矣 但今潦水方漲 自都監并速執促 而一一準給價本 一辯啓知其數”

90) 「光海君日記」 권153 光海君 12년 庚申 6월 甲寅條, “營建都監啓曰 材木募納之事 曾有事目 … 故應募者絕無前日鄭大海所持去空名帖 其數額優 而各人分給之數 僅若干丈 且材木納于京江之人 雖有除職承傳 而該曹越舉行 國家有似失信 故已納悔之而未納者無勸 … 速爲除職以來應募之人爲當”

91) 「光海君日記」 권153, 光海君 12년 庚申 6월 乙亥條, “營建都監啓曰 備忘記材木 及今措備然後 明年仁慶宮 可以

화와 그로 인한 목재의 심각한 부족현상을 보여 주는 것과 동시에 官·民需用 목재를 가리지 않고 상당부분을 목재상들에 의존하는 상황을 보여 준다. 이미 목재는 국가의 전매품이 될 수 없었으며, 목재의 품귀현상은 가격의 폭등을 초래하고 이를 전매하는 경강변 상인들은 상당한 부를 축적해 갔을 것이다.

이처럼 광해군 연간에 목재의 매매행위가 급증하는 배경에는 임란으로 인한 대대적인 관영 건축의 복구공사가 연이어 추진되었으며, 산림의 황폐화로 인한 목재의 품귀현상마저 일어나면서 역설적으로 목재 상품의 시장화는 더욱 가속화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목재상들의 이름이나 내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는 탓에 현재로서 당시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란 불가능하다. 다만 경강변의 목재상들로 추측되는 이들이 관영 공사에 목재를 공급했던 사례는 확인 가능하다.

우선 효종 3년(1652)의 창덕궁창경궁수리 시에 목재는 국용과 목재상의 소유를 가리지 않고 급한 대로 구해서 쓰기로 하여, 우선 경강변의 적치물 중에서 가합재목을 간신토록 하였다. 그러나 많은 목재들이 內需司와 諸宮家에서 着標를 해 둔 것이라 우선 쓴 후 紿價토록 하였으나,⁹²⁾ 부족한 물량은 경강변 목물소에 파견된 감역관 任允錫의 보고에 따라서 근처에 사는 목재상 趙士宗이 비축한 재목 1백여 조를 사들이기로 하였으며, 그 중 부합 목재는 돌려주고 있다.⁹³⁾ 상당량을 개인으로부터 사들였다고 하므로 조사종 외에도 많은 목재상들로부터 매입했을 것이다.

순조 4년(1804)의 인정전영건공사에서는 대량과 같은 주요 구조재를 비롯하여 풍판, 익공, 선자연 등의 많은 물량을 각 도의 지정으로 조달하였다. 그러나 장연목과 중연목 1천 삼백주

始役 … 明年仁慶宮材木措備事 累承聖教 臣等反?思量 而此時動象伐木 勢極難便 不得已空名帖募得 且江原道產材各官貢物防納換作材木事 曾已入啓蒙允矣 空名帖募納之數 ?寡不可預料…”

92) 「昌慶宮昌德宮修理都監儀軌」, 傳敎 壬辰 정월 22일조

93) 「昌德宮昌慶宮修理都監儀軌」, 傳敎 壬辰 3월 초5일조

는 목재상 沈龍福이 경강변에 적치해 둔 것을 사들였으며,⁹⁴⁾ 장송판 2천립을 목재상 梁應澤으로부터 매입하였다. 이 가운데서 1천 1백립은 이미 납품했으나, 나머지 9백립은 청평천에 당도했으며,⁹⁵⁾ 유하 도중에 각처에서 목물세를 징수하는 바 이를 침해치 말도록 하였다.⁹⁶⁾ 목재상이 개인적으로 강원도 산지로 나아가 확보하고 있는 물량임을 알 수 있다. 이 장송판은 다양하게 사용되는 탓에 일찍부터 상품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이 공사의 기계목으로서 轆轤機用 돛대 8개는 경강변 밤섬에 거주하는 船主 南來百과 張仁弼으로부터 매입하였다.

이와 같이 각 도의 목재산지로 목재를 지정하여 상당 부분을 총당하였지만, 이미 상품화되어 경강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거나 특수한 물품은 목재상들로부터 매입해 들였다. 예로서 순조 32년(1832)의 서궐영건공사에서는 원래 체목 2천 2백주, 연목 7천개를 三南, 海西, 關東 등지의 송전에서 작취토록 지정하였으나,⁹⁷⁾ 목재 산지의 실정은 매우 어려워서 안면도의 경우는 6백주 중 약간만, 그리고 통영의 지정 6백개 중 백여개만 확보되는 정도였다. 그래서 공사연기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여,⁹⁸⁾ 부득불 호조에서 사양산의 목재를 사들이도록 하는데, 혹시 있을지 모를 목재상의 남벌을 염최토록⁹⁹⁾ 하는 등 결과적으로 목재상으로부터 매입한 것이 훨씬 많았으며, 금액으로 4만량에 달했다.¹⁰⁰⁾

이와 같이 원거리의 사양산 목재를 사들이는 경우는 목재의 부합 여부를 판별하고, 가격을 산정하는 등을 담당할 관원을 파견하는 경우도

94) 『仁政殿營建都監儀軌』, 移文 甲子 2월 조, “今此營建所用長中椽木一千三百箇木商沈龍福處給價貿來於水上各處今方流下爲去乎”, 同 4월 조 “營建所用長松板二千立給價木商梁應澤處使之貿來矣”

95) 『仁政殿營建都監儀軌』, 移文 甲子 4월 조

96) 『仁政殿營建都監儀軌』, 畜目 附式例 甲子 2월 조

97) 『西闕營建都監儀軌』, 承傳 己丑 11월 13일 조

98) 『西闕營建都監儀軌』, 承傳 庚寅 2월 초10일 조

99) 『西闕營建都監儀軌』, 移文 庚寅 정월 조

100) 『西闕營建都監儀軌』, 移文 庚寅 2월 조

많았다. 예로서 순조 34년(1834)의 창경궁영건공사에서는 도감 소속의 別武士 金翼龍, 折衝李仁得,¹⁰¹⁾ 折衝 前僉使 吳弼賢 등 3인을 貿木牌將으로 정하여 이들로 하여금 사들이는 일을 맡게 했는데, 즉 閑散 장수배에게 목재 사는 일을 맡길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¹⁰²⁾ 혹시 있을지 모를 가격 조작이나 치수의 부정확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들이 사들인 목물가는 21,200냥으로서 전체 공사비의 16%를 차지할 정도였다.¹⁰³⁾

이러한 목재시장의 활성화에 편승하여 상인들 중에는 목재의 買占을 통하여 자본을 축적하면서 기존의 시장체제를 바꾸어 갔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경강변의 목재상들은 상당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정조 15년의 경우는 한강 상류로부터 경강변으로 운반되는 길목인 뚝섬에서 소위 有錢者들이 이를 모두 買占하여 오히려 이전까지 그 판매권을 가졌던 長木廳에 轉賣하는¹⁰⁴⁾ 사례도 있었다. 이 경우 有錢者는 경강에 근거를 둔 목재상들로서 종전 까지 국용물품을 전매하던 市廳계 상인이 아니었다. 이들은 목재를 경강변으로 운반해 오는 船商과 그 독점판매권을 가진 長木廳과를 격리시키고 중간 상인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해 가다가 점차 경제적으로 성장해 감으로써 경강변으로 운반되는 목재를 모두 매점하여 오히려 長木廳을 자금면에서 견제 압박하기에 이르고, 마침내 목재시장을 장악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경강변 목재상들은 보다 넓고 깊게 목재의 상품유통시장에 관여해 갔다. 이들은 종래의 貢人이나 廛人들과는 달리 상업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어떠한 혜택과 특권도 부여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꾸준한 자본 축적을 통하여 목재 유통시장의

101) 李仁得은 1836년의 종묘 영녕전공사에서는 看役牌將을, 1842년의 서궐영건공사에서는 도편수를 맡은 목수이다.

102) 『西闕營建都監儀軌』, 『昌慶宮營建都監儀軌』 座目條

103) 『昌慶宮營建都監儀軌』, 营建都監匠料及實入雜物折價數條

104) 姜萬吉, 『朝鮮後期商業資本의 發達』, 고려대출판부(1983년), p. 81에서 재인용

지배권을 장악해 갔을 것이다.

특히 조선시대 최후의 궁궐공사였던 경운궁 중건공사(1904년)에서는 南署 茶洞의 목재상 韓得珠가 제시한 목물 견적서를 보면, 대량을 예로서 개당 120元으로, 그리고 中衿小椽은 개당 20錢으로 매기는 등 거의 모든 종류의 木物 가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作骨이나 頭折과 같은 중간치련 공역비도 포함한 것으로서 총액 95,183元 30錢을 제시하였다.¹⁰⁵⁾ 전품목에 걸쳐 상품으로서 단가가 매겨졌을 뿐 아니라 여기에 치목공전까지 포함된 점이다.

치목공전이 목물가에 포함된 것은 목재상들이 단순히 체목을 판매한 것으로 한정할 수 없는 단서이다. 수요자의 물목에 따라서 체목을 적절히 치목해서 판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었기¹⁰⁶⁾ 때문이다. 그렇게 볼 때 목재상의 목재 판매란 체목의 작별과 운송, 그리고 치목공역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¹⁰⁷⁾ 경강상인 중에 선재도매를 하다가 뚝섬 등지를 중심으로 산재하던 선장 등을 고용하여 조선업을 영위했던¹⁰⁸⁾ 것을 참작하면, 목재상들이 치목소를 경영하는 한편 船匠이나 鉏匠과 같은 치목공장을 고용하여 목재산업을 발전시켜 갔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목재의 상품화나 시장경제로의 진입은 기본적으로 부재의 규격화나 단위척도의 보편화, 그리고 치목공역의 계량화를 전제로 하지 않고는 어려운 일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부재공급의 원활화를 통하여 건축생산의 합리화

나 공기의 단축을 이끌어 냄으로써 건축생산력을 진작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4. 경강변의 치목업

4-1. 관영치목소의 운용

경강변으로 운반된 체목은 그대로, 또는 치련과정을 거쳐서 반입되었다. 특히 관영공사의 목재를 조달할 때는 근처에 이를 관리하는 사무소가 설치되었다. 광해군 연간에 창덕궁과 창경궁을 중건할 때 경강변에 재목소가 있었는데, 큰 비로 목재가 떠내려 간 일을 두고 書員과 庫直을 논죄한¹⁰⁹⁾ 일이 있고, 효종 3년(1652)의 창덕궁창경궁 수리에서는 목물소가,¹¹⁰⁾ 그리고 순조 5년(1805)의 인정전 영전에서는 폐장 3인과 사환 1명이 상주하는 운목소가 설치된¹¹¹⁾ 예를 들 수 있다.

이 사무소들의 역할은 목재 반입의 관리에 있겠지만, 강변에서 치목공역을 감독하는 역할도 맡았던 것 같다. 예로서, 현종 7년(1667)의 영녕전개수공사의 경우, 경강변의 공역을 살펴보니 많은 재목들이 초치련 중에 있었는데, 再鍊하는 공역은 극히 커서 약간의 私木手 만으로는 담당하기 힘들므로 京居各衙門 목수를 추가로 투입하고,¹¹²⁾ 도감 郎廳과 監造官이 경강변에 나가 재목 劈鍊하는 일을 감독토록 하였다. 또한 치련역사로 나가는 郎廳·監造官·上直房에게 등유가 지급되었다. 즉 이들이 주야로 상주하며 작업을 감독하던 곳은 부재 치련작업이 행해지는 치목소였다.

그러나 초치련차 경강으로 나가는 일의 재가를 득한 후 이에 필요한 가가의 설치와 역원, 공장의 소용물품을 마련하며,¹¹³⁾ 도감의 목역을 맡은 제1소의 관리가 과연 상주하고 있다. 따

105) 『中和殿行閣三門所用物種價未撥冊』

106) 배희환 구술, 앞의 책, p. 47, 목수이면서 치목을 대는 일로 많은 돈을 번 한용식의 예로서 오히려 치목 납품이 더 많은 이윤을 남겼음을 증언한다. 『備邊司膳錄』 99, 영조 12년 内辰 6월 6일 조, “如樓柱宮材及可用於板材之木若斫而賣之 則輒受倍利”, 吳星의 앞의 책, p. 87에서 재인용. 여기서 체목들이 뚝섬 내에 있던 재재소에서 각재나 판재로 가공되어 매각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107) 『京城府史』 제4권, p. 1059, 구한밀 용산 목재상들은 서울까지의 운반기관인 牛車의 경비의 절반을 항상 왕실에서 보조받았다는 것은 이들이 운반업까지 지배했음을 뜻한다.

108) 『孫禎陸』, 앞의 책, p. 96

109) 『光海君日記』, 12년 10월 6일 己酉條

110) 『昌慶宮昌德宮修理都監儀軌』, 傳教 壬辰 2월 조

111) 『仁政殿營建都監儀軌』, 票目 甲子 2월 조

112) 『永寧殿改修都監儀軌』, 各所分掌秩 一所, 丁未 2월 25일 조

113) 『永寧殿改修都監儀軌』, 各所分掌秩 一所, 丁未 2월 25일 조

라서 이곳은 근처의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사를 위해서 별도로 마련된 초치련 작업 위주의 임시 치목소임을 알 수 있다.

경강변 치목소의 작업내용에 대해서는, 순조 34년(1834)의 창경궁영건을 예로서, 기둥과 보, 연목, 공답, 창살 등의 부재별로 편수를 정하여 각 分所에서 치련하고, 각 소에 牌將 1인씩을 두어 이를 전담토록 하였다.¹¹⁴⁾ 1인의 패장이 부재별 치목 분소장이 되고 그 아래에 약간명의 공장이 딸리는 조직으로 작업이 진행된다.

이 치목소는 “소입 목물을 사촌리 강변으로부터 초련하여 수입하고, 큰 목물을 수레로 운반하며, 나머지 연목, 적심용 비목은 三營門에 할당된 마태로 운반하라”¹¹⁵⁾ 는 것에서 사촌리 강변에 위치했음을 알 수 있다.

사촌리는 앞 서 본 바와 같이 조선후기의 목재 공급처로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곳이다. 전통 궁궐목수였던 고 배희한이 이곳에는 나라 치목소가 있었다¹¹⁶⁾고 회고했듯이 관영공사 때마다 이러한 치목소를 두고서 치련부재를 조달했던 것이다. 또한 새남터, 즉 사촌리 일대에 거장이나 선장들이 살면서 치련으로 생업을 유지했다¹¹⁷⁾는 것으로 보아서 이러한 치목소에 고용되기도 했을 것이다.

사촌리의 목재조달에 관해서는 광무 4년(1900)의 영희전영건공사의 목재를 사촌리에서 치목시역하였으며,¹¹⁸⁾ 광무 8년(1904) 경운궁중 건공사에서도 목재를 사촌리로부터 반입하기 위해서 도로와 교량을 보수하여 이곳의 적치재목을 반입한¹¹⁹⁾ 사례가 있었다.

그러면 경강변 치목소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1904년의 경운궁 중건공사를 사례를 통하여 살펴 보자.

114) 『昌慶宮營建都監儀軌』稟目 壶巳 11月條

115) 『昌慶宮營建都監儀軌』, 甘結 甲午 3월 조

116) 배희한 구술, 앞의 책, p. 38

117) 배희한 구술, 앞의 책, p. 39

118) 『永禮殿營建都監儀軌』, 時日 2월 초3일 조

119) 『慶運宮重建都監儀軌』訓令 乙巳 8월 12일 楊川郡條

경운궁중건공사의 치목작업은 江治木所와 重建所, 彰義宮治木所로 삼분하여 진행되었다. 강 치목소는 앞서 언급한 나라 치목소라 여겨지는 데, 사촌리 근처의 沙湖¹²⁰⁾에 위치하여, 거의 상시적으로 운영되었던 것 같다. 여기서는 수운으로 운반된 재목을 사호에 적치하였다가 物目에 따라 濬出하여 치련하는 공역을 맡았다.

관련기록인 『重建都監會計』에는 甲辰 8월 초1일부터 乙巳 12월까지 매달 강치목소의 각項役費가 기록되는데, 『匠役記綴』의 강치목소에서 매달 5일간씩 지급된 ‘貨物及治鍊費’와 ‘日費及食價’를 합한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匠役記綴』의 「貨物及治鍊費」 지급 내역에는 都廳 및 牌將廳 燈油價, 斫耳別音工錢, 船匠初治鍊工錢, 昙鉅匠工錢, 材木濬出移運雇價, 再頭折工錢 등이 기록되고, 「日費及食價」에는 別看役 또는 監董 1員, 牌將 2인, 雇員 1인, 巡檢 2인, 庫直 1명, 使令 1명, 使喚 1명, 使喚旗手 1명 등과 목수, 船匠所任, 擔軍, 支架軍, 솔등쾌, 夜直軍 등 匠募等牌에게 지급된 日費, 食價, 工錢의 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부터 都廳 및 牌將廳은 강치목소를 관장하는 관리기구이며, 여기에 별간역 또는 감동 1원, 패장 2인 외 하급 사무원으로 구성된 사무조직과 이들의 지시를 받아 직접 작업에 임하는 기술직인 목수, 선장, 결거장과, 기타 단순한 육체노동자인 잡역부로 구성된 작업조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직의 강치목소는 다음의 수순으로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수운으로 적치된 목재는 모군에 의해서 강변 치목작업장으로 끌어 올려진다. 목수는 이 목재를 요구된 물목에 따라서 소요차수로 정현하면, 선장소임은 정현된 재목을 휘하의 선장들에게 초치련토

120) 이 지명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重建都監會計』나 『匠役記綴』에서 沙村과 沙湖를 구분하고 있어서 동일 지명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러 기록을 종합해 볼 때, 당시 沙村里 위쪽 旭川 앞의 모래톱으로 인한 수변으로 짐작된다.

록 지시하고, 초치련된 재목은 결거장이 소요 길이로 절단하는 과정이 그것이다.¹²¹⁾ 초치련된 각종 용재는 車運이나 馬運을 거쳐 중건소나 창의궁치목소로 운반되고, 다시 이곳에서 재치련 등을 거쳐 부재화되어 조립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¹²²⁾

강치목소에서 초치련을 끝내고 중건소로 운반된 부재들은, 갑진년 8월부터 병오년 9월까지 柱材와 柱木, 不等木, 檻材와 檻木, 體木, 剋鍊木, 道里材, 防材, 樣材와 樣木, 片木, 條里木, 機械木, 板材, 修粧材, 지붕재 등이다. 대재에서 소재, 체목에서 각종 부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만, 대개 초치련된 用材로서 재치련이나 精鍊된 부재는 아니었다.

이는 강치목소에서 지급된 공전 중에 초치련 공전인 船匠初治鍊工錢과 夏鉄匠頭折工錢 외의 다른 돈은 지출되지 않았으며, 여기서 운반된 부재가 중건소에서 다시 선장, 결거장, 기거장, 인거장, 조리장 등에 의하여 재치련이나 정련의 과정을 거쳐서 부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중건소로 운반된 高柱, 圓道里, 柱木 등은 길이가 10척 내외로 한정되고, 선장, 결거장, 기거장, 인거장, 조리장 등이 다시 치련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현종 7년(1667)의 영녕전개수공사에서 “재목을 초련하기 위해 이 달 21일에 경강변으로 나가는데, 그곳의 剋鍊 끝낸 재목을 수레로 운반할 때 대부등이 비록 체대목이긴 하나 이미 초련되어 있으므로 별대부등은 수레로 6隻, 대부등은 4隻으로 시험삼

121) 「匠役記綴」 江治木所 日費及食價條에 매월 5일마다 지급하는 日費를 기록하는데, 예로 甲辰 8월 16부터 20일 까지의 기록에, 목수 35명, 선장소임 2명에게 5냥/일씩 각 175냥, 50냥을 지급한다. 같은 기간 江治木所 賃物及治鍊費條에서, 지급된 船匠初治鍊工錢, 夏鉄匠工錢, 再頭折工錢은 각각 1119냥 1전, 151냥 6전, 75냥 7전 5푼이다. 이는 목수와 선장소임이 상근자이므로 편의상 日費를 대체로 뮤어지불한 것이고, 船匠初治鍊工錢, 夏鉄匠工錢, 再頭折工錢은 비상근으로 모집된 船匠, 夏鉄匠에 대해 매일 都給錢으로 지급된 것이다. 예로 「匠役記綴」 重建所船匠初治鍊役記條에서는 재목의 종류에 따라 3전 ~ 4전 5푼/척의 都給錢이 지급된다.

122) 「重建都監會計」 甲辰 8월 이후 沙湖로부터 重建所나 彰義宮治木所로 운반된 用材의 車運 및 馬運雇價 참조

아 실어 운반해 보고, 경중을 살펴서 수를 가감하는 것이 마땅하다”¹²³⁾고 하여 경강변 치목소는 초치련 부재를 생산하고, 이를 공사장 부근의 치목가가로 옮겨서 재련과 정련을 통한 완성 부재로 만들었던 것이다.

경강변에 있었던 관영치목소는 일제의 강점하에 들면서 소멸되고 말았지만, 그 대신에 목재상이나 치목공장들이 운영하는 치목소는 근대화 이전까지도 여전히 존속하고 있었다. 특히 지금의 원효로 4가 일대에 목재를 제재하여 판매하는 목재상들이 많았으며, 그 일대에 영림서출장소가 설치되었고, 옛 사촌리의 주변으로 일본인들의 제재소가 운영되기도 하였다.¹²⁴⁾

4-2. 경강 치목공장

경강상인들은 곡물선운이나 船商 등 그 활동의 대부분이 선박에 의존했던 만큼 일찍부터 여러 가지 양상으로 선박건조에 관여하면서 그 중에 어느 정도의 자본집적을 통해서 선장들을 고용하여 조선도매업까지 겸영해 간 경우도 많았다.¹²⁵⁾ 마찬가지로 목재의 판매와 치목관련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경강의 목재 저류지와 치목소를 근거로 한 치목공장들의 활동도 크게 주목되지 않을 수 없다.

목재의 매매는 체목을 그대로 넘기지 않는 한 초치련이 수반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목재 판매와 치목을 별개의 업종으로 보는 것에는 무리가 없지 않다. 관수용이든 민간용이든 간에 물목에 따라서 치수대로 켜고 자른 목재를 판매할 것이기 때문에 목재상들 가운데는 치목 공장을 겸업하는 경우가 많았기¹²⁶⁾ 때문이다.

그렇게 본다면 종종 연간의 “경강의 재목을 사려는 자가 있으면 홍정을 붙여 매매하여 생업을 삼는자”¹²⁷⁾와 같은 경강인이라든지, 광해

123) 「永寧殿改修都監儀軌」 丁未 2월 25일 조

124) 「京城府史」 제 4권, p. 1001, 이미 1893년 경 용산지역에는 前田이란 성씨의 일본인이 목재판매업을 하고 있었으며, 목수와 석수가 1인씩 들어 와 있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 제재소가 많이 들어 섰다.

125) 孫禎陸, 앞의 책, p. 93

126) 배희환이 증언하는 목수 한용식이 치목을 대면서 큰 돈을 벌었다는 예를 들 수 있다.

연간의 “일생의 생계를 오로지 목재에 의존하는 삼강백성”¹²⁸⁾같은 사람 중에 매매와 치목역을 겸업하는 이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앞서의 경강변 목재상들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 매매와 치목을 겸업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치목공장에 관련된 자료는 얻기 어렵다. 다만 부분적으로 경강변에서 자귀질과 톱질을 전문으로 하는 선장이나 거장 등 치목공장의 활동에 대한 기록을 통하여 그 일단을 살펴 볼 수 있다.

우선, 1667년의 영령전 수개공사의 목재를 경강변에서 사목수를 동원하여 초련하고, 재련은 이들과 함께 경거 각아문 소속의 목수를 동원하였다.¹²⁹⁾ 초치련을 담당한 이들이 사목수라 한 것을 보면 이들이 경강변의 치목공장임을 짐작케 한다.

그 직후 1677년의 남별전 중건공사의 목재도 경강변에서 초치련하는데, “條乙音(조름)하기 위해서 이미 중거 2부는 투입되어 작업이 진행되며, 인거장은 예전 처럼 三江의 鉅匠을 데려와서 부역토록 한다”¹³⁰⁾고 하였다. 三江이란 경강변의 龍山江과 西江, 東江을 일컫는 것인데, 즉 이들은 영전청 소속이 아닌 사목수로서, 경강변 일대에서 초치련을 전문으로 하는 거장이었다. 영녕전 수개공사와 같이 초치련공역은 삼강을 근거지로 선장이나 거장이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용목재의 치목을 위하여 경강변의 임시 치목소에 관리가 파견되어 감독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치목작업을 직접 담당하는 공장들은 이곳을 근거지로 한 私匠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을 알게 해 주는 기록은 별로 없지만, 1805년의 인정전영건공사에서 도감으로부터 舟橋司에 보낸 공문에는, “인정전 영건 시역의 이달 내 시행하는 일로서, 다시 날을 잡기로 20일을 잡아 시역토록 하였는데, 이번 체목을 치련하는 일에 어려움이 많은데, 몇 안되는 목수로 하여금 모든 책임을 지고 거행할 뿐이기 때문이다. 예전에 초벽련 작업을 시켜 보니 大斫耳手, 즉 선장들은 만족할 만하다 하므로, 이에 移文하므로 貴司에 案付된 선장 50명 한도 내에서 각자 대자귀를 지참하여 이번 20일 새벽까지 올려 보낼 것을 각 津의 別將 등처에 각별히 嚴飭하도록 하라”¹³¹⁾고 하였다. 여기서 舟橋司가 관장하는 각 津은 경강에 위치한 용산강 등에 있었으므로 초치련하는 선장들의 근거지도 이곳이었다.

이 선장들이 舟橋司에 안부된 공장들이라 하지만, 19세기로 들어서 안부장인이란 官府에서 공장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고, 또 관영공사에서 부역이 아닌 임금을 받고 공역에 임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었다.¹³²⁾ 따라서 평상시에는 민간의 공역, 즉 조선업이나 목재상들의 제재업에 종사했거나, 또는 자신이 목재상을 겸업하였을 것이다.

경강변 치목공장들은 1904년의 경운궁중건공사에서 확인된 것과 같이 관영공사에서 임금을 받는 조건으로 공역에 참여하였으며, 이후 근대적 형태의 제재소가 등장하는 일제강점기 하의 상당 기간 경강변에서 치목이나 목재상으로서의 활동을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일제강점

127) 『中宗實錄』, 16년 7월 25일 甲戌條

128) 『光海君日記』, 4년 2월 15일 庚辰條

129) 『永寧殿修改都監儀軌』, 一所 粟目 丁未 2월 25일 事目條

130) 『南別殿重建都監儀軌』 丁巳 4월 초 5일 조, “本所掌木物條乙音次中鉅二部段作造進排事既已手決分付爲有在果同引鉅段在前則三江鉅匠等促來付役而近因渠等, 上言防塞此事是如臥乎所別立募軍六名爲乎乙喻元募軍中六名除出使役爲乎乙喻指一分付事稟堂上手決內三江鉅匠促來使用”

131) 『仁政殿營建都監儀軌』 移文 甲子 8월 조, “仁政殿營建始役以今月內爲之事命下而以二十日更爲始役矣今此體木治鍊之役有難以數小木手全責舉行竊不喻前已試用於初勞鍊之役船匠輩大斫耳手段足可堪用乙仍于茲以移文爲去乎貴司案付船匠限五十名各持大斫耳今二十日曉頭及良知委起送之意各別嚴飭於各津別將等處爲置 舟橋司”

132) 金東旭, 「朝鮮時代 造營組織 研究(II)」, 大韓建築學會誌 27권 113호(1983년 8월) 참고

기 하의 사정과 관련해서는 일인들이 설립한 제재소들이 이 일대에 다수 들어 선¹³³⁾ 한편, 앞서 거론한 바 있는 배회환의 증언과¹³⁴⁾ 같이 경강변 일대의 밤섬, 노량진, 새남터 등지에서 선장과 거장 등이 목재상으로서, 또는 치목공장으로서 목재산업을 존속시켜 갔다.

그런 점에서 경강변을 근거지로 하여 서울의 각종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목재를 공급하던 목재상들과 치목공장들은 조선후기의 건축생산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며, 따라서 당시대의 건축생산사를 서술하는 데 있어서 그 위치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위치를 점하여 왔다고 하겠다.

이후 경강변의 상황은 해방 이후 일정기간까지도 미약하나마 존속되고 있었으나,¹³⁵⁾ 한강제방이 축조되고, 그 일대가 개발되어 도심화되면서 어느덧 소멸되기에 이른다. 근대적 형태의 제재소가 등장하고 전통건축에 대한 수요의 격감도 그 명맥을 잊게 한 요인이었다.

5. 맷는말

경강변은 조선초기부터 조운과 관련하여 각

133) 1934년의 「附錄 鮑內會社一覽」, 「朝鮮十三道誌」의 工業製材業편에 1933년 1월 당시 자본금 십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朝鮮 내에서 製材業에 종사하는 회사명, 소재지, 설립년도, 대표자 등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수는 15개이며, 설립년대는 1915~1930년이고, 대표자는 일본인으로 되어 있다. 그 중 京城府에 근거지를 둔 회사는 5개이며, 소재지는 漢江通, 三坂通, 南大門通, 岡崎町, 青葉町이었다. 이를 통해서 1915년 이후 日人们이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근대적 형태의 제재소를 운영하면서 조선목재산업의 기반을 장악하고 있었던 한편, 조선의 목재상이나 치목업의 영세성을 반증하고 있다.

134) 배회한 구술, 앞의 책, p. 39, "그런데 자구쟁이허구 톱쟁이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저 노량진 사람, 밤섬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 전에는 큰자구질허구 톱질허구 그것만 가서 먹구 사는 거야. 새남터 거기는 톱쟁이, 자구쟁이 그 걸루 종사해. 그래 이 대자구는 따루 자구질만 허는 사람이 있다구. 목수들이 그거 안 해요. 그거 허는 사람 센쟁이 라구, 센쟁 편수두 있구 그래."라고 하였다.

135) 孫賴睦, 앞의 책, p. 255에서, 西江에 현존하는 船大木이 몇몇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종 공물의 집산지이자 상업중심지로 발전하였다. 특히 신도건설과 관련하여 수운의 편리성과 서울로 반입하는 경로상의 이점 때문에 일찍부터 목재의 공급처가 되어 왔다.

이후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서 경강변은 서울의 각종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목재의 중간 공급처이자 목재 매매시장으로서 그 기능이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수송과 치목 등 관련산업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경강변 목재의 수급사정은 당시대의 건축생산활동의 추이를 결정짓는 절대적 관건이 되어 왔다.

대재의 확보 가능성과 연변까지 수송의 편리성을 감안한 대표적인 산지로는 강원, 전라, 충청, 황해도였다. 산지에서 차별된 목재는 뗏목이나 선박을 통하여 한강과 해로를 따라서 이곳에 저류되었다. 특히 경강변 일대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취급하던 곳은 한강으로 합류되는 육천 좌우 연변의 사촌리와 탄항계였다. 이곳은 목재의 저류 뿐 아니라 목재상들의 매매와 공장들의 치목공역의 근거지로서, 전적으로 목재와 관련하여 발전된 마을이었다.

조선시대 경강변에 집적되던 목재의 상당 부분은 국용이었지만, 일부는 민간에 매매되기도 했다. 특히 국용 목재의 조달은 공인이나 외도고를 통한 연례의 常貢으로 비축했지만, 임란 이후의 궁궐 복구와 같은 일시의 대규모 공사에서는 이러한 公儲의 비축물량 만으로는 불가능했다. 따라서 각 도 산지로 소요물량을 지정하여 해당 납세로 회감하는 방법의 別貢으로 조달하는 것이 상례였다.

그러나 광해군 연간에 공명첩의 발매를 통하여 조달하는 경우와 같이 목재는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임란 이후 산림의 황폐화와 목재의 부족현상이 심화되면서 경강변을 중심으로 목재의 밀매가 성행하게 되었다.

산지 별공을 감당하지 못한 경우 이곳에서 목재를 사서 대납한다든지, 목재상과 결탁된 지방관리의 도벌과 남작이 빈번할 정도로 목재

의 부족현상이 심화되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목재시장의 활성화를 가져 왔으며, 초기부터 미미하나마 존속해 왔던 목재의 매매활동을 급증시켰다.

목재시장의 저변이 확대되면서 목재상들의 활동도 그 폭을 크게 넓혀 갔다. 이에 국용 목재의 상당량을 목재상들이 납품하는 상황으로 발전하였으며, 조선후기 전반에 걸쳐서 대규모 관영공사에는 예외없이 공납과 貨木을 병행하여 목재를 조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목재의 상품화는 기본적으로 물목에 따른 소요치수의 치목공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관영공사에 목재를 공급하는 경우 경강변 저류지의 주변에는 임시 치목소가 운영되었으며, 치목공역 동안 감역관이 상주하면서 공장들의 작업을 감독하도록 하였다.

치목소에서 공역을 담당하던 공장들은 자귀나 텁을 연장으로 삼는 선장, 인거장, 결거장들이었다. 이들은 관에 소속되지 않고 사촌이나 탄항, 밤섬, 뚝섬 등지에 터전을 둔 경강 민간 공장들이었다.

목재상들 중에는 착실한 자본축적을 통해서 공장을 고용하여 목재 매매와 치목업, 심지어 운송업까지 경영하면서 부를 축적해 간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목재시장의 활성화와 관련한 목재업의 발전은 기본적으로 부재의 규격화나 척도기준의 일반화, 그리고 치목공전의 계량화 등이 수반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를 통하여 부재의 신속한 공급과 공기의 단축, 더 나아가서는 건설공정상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었으며, 궁극적으로는 조선후기의 건축생산력을 크게 진작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일제강점기 하에서도 경강변의 목재산업은 그런대로 유지하고 있었지만, 강력한 자본을 바탕으로 한 일본인들의 제재소에 밀려 나기도 하고, 급속한 도시발전과 전통건축의 단절과 함께 완전히 소멸되기에 이른다.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備邊司謄錄』, 『京城府史』, 『景慕宮改建都監儀軌』, 『國역華城城役儀軌』, 『慶運宮重建都監儀軌』, 『南別殿重建廳儀軌』, 『南殿增建都監儀軌』, 『垂恩廟營建都監儀軌』, 『西闕營建都監儀軌』, 『永寧殿改修都監儀軌』, 『永禧殿營建都監儀軌』, 『懿昭廟營建廳儀軌』, 『仁政殿營建都監儀軌』, 『貞殿重修都監儀軌』, 『匠役記綴』, 『儲承殿儀軌』, 『重建都監會計』, 『昌慶宮昌德宮修理都監儀軌』, 『承政院日記』, 『中和殿營建都監儀軌』, 『昌慶宮營建都監儀軌』, 『昌德宮營建都監儀軌』, 『中和殿行閣三門所用物種價未撥冊』

姜萬吉, 朝鮮後期 商業資本의 發達, 고려대출판부, 1983

민족문화추진회 편, 신증동국여지승람, 솔출판사, 1996

배우리, 우리 땅이름의 뿌리를 찾아서 1, 1994
배회한 구슬, 이제이 조선톱에도 녹이 쓸었네,
뿌리깊은나무, 1981

서울시사편찬위원회 편저, 서울六百年史(文化史
蹟篇), 1995

孫禎睦, 朝鮮時代都市社會研究, 一志社, 1982

, 韓國開港期 都市變化過程研究, 一志社,
1984

吳星, 朝鮮後期商人研究, 一潮閣, 1997

金東旭, 朝鮮時代 建築工事에 있어서 木材供給
體制 -水原城廓工事を 중심으로-, 大한
건축학회지, 27권 117호, 1984년 4월
, 朝鮮時代 造營組織研究(II), 大한건축
학회지, 27권 113호, 1983년 8월

柳川勉, 朝鮮十三道誌 附錄 鮮內會社一覽, 昭和
九年

朝鮮總督府作製, 一万分一 朝鮮地形圖集成, 柏
書房, 大正四年

A Study on the Wooden Building Material of Hangang Riverbank in the Second Half of Chosun Dynasty

Lee, Kweon Yeong

(Assistant Professor, DongPusan College)

Seo, Chi Sang

(Associate Professor, TongMyong Univ. of Information Tech.)

Kim, Soon Il

(Professor, Pusa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In the Chosun Dynasty, the wooden building materials for constructing the official buildings within a capital city were supplied by way of water transport, and they were stored at Hangang riverbanks. After being firstly treated with primary processed-goods there by several craftsmen groups, they were carried in the relevant site of construction by car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process of those supply, the roles of merchants and craftsmen in the process.